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7. .
제출자 : 하남시장

1. 제안이유

- 감일동 1통 1, 2반 일부 지역의 행정동 경계 조정으로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및 거주민 불편사항 해소

2. 주요내용

- 가. 감일동 1통 1, 2반 일부 지역에 대한 행정동 경계조정
- 종전 감일동 301필지(120,562㎡) → 감북동 편입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50천원/년

- 반장상여금(50천원*1명) = 50천원/년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 기간: 2025. 5. 12.~2026. 6. 2.(21일간)
- 나. 의견 내용
 - 부서의견: 감북동 1건(개정안 별표 상 관할구역 일부 변경 요청)
 - 검토결과
 - 개정안 별표 중 감북동(3통 7반), 감일동(1통 2반)의 관할구역이 착

오로 잘못 기재되어있다는 의견 접수에 따라 올바르게 수정할 필요
요가 있어 내용 반영함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없음
-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원안동의

9. 참고사항: 덧붙임

- 감북동-5104(2025.05.30.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의견 제출’)

10. 관련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감북동, 감일동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감북동	3통	1반	감북동 401
		2반	412
		3반	413
		4반	415
		5반	산119
		6반	감북동 424,433
		7반	감일동 182~189, 210~222
감일동	1통	1반	감일동 173
		2반	223~333
		3반	246, 249
		4반	328,338
		5반	359, 36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자치행정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자치행정과장 정 주 연
	팀장 직위 · 성명	자치행정팀장 이 재 민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서 정 욱 (031-790-5409)

신 · 구조문대비표(별표)

통 · 반 명칭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현행]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감북동	3통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감북동 401 412 413 415 산119 424,433
감일동	1통	1반 2반 3반 4반 5반	감일동 173,183,210 205~333, 246, 249~249의8 246, 249 328,338 359, 361

[개정(안)]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감북동	3통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감북동 401 412 413 415 산119 감북동 424,433 감일동 182~189, 210~222
감일동	1통	1반 2반 3반 4반 5반	감일동 173 223~333 246, 249 328,338 359, 36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제12조(수당 등)제2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통·반 신설에 따른 반장 상여금 지급(50천원×1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통·반 설치에 따른 반장 상여금을 일반회계로 지출하고자 함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반장 상여금	50	50	50	50	50

다. 재원조달방안 : 감북동 일반회계(2026년 본예산)로 편성

-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필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과장(정주연)

관계법령 발췌서

1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동·리에서는 행정 능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2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 2024. 9. 30.] [조례 제2356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의 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확정기준)

통은 2개에서 20개 반으로 반은 10가구에서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 마을 또는 공동 주택 등은 취락 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수당 등)

- ① 통·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새로 위촉되거나 해촉된 자에 대하여는 위촉 또는 해촉일 기준으로 월정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월정수당 지급을 위한 월 근무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통·반장에게 지급한다.
- ③ 통장회의에 참석하는 통장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서의견

살고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감 북 동

수신 하남시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

자치행정과-12626(2025. 5. 12.)호와 관련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의견서를 제출 합니다.

붙임 의견서 1부. 끝.

감 북 동



주무관	오지영	행정민원팀장	유예림	감북동장	2025. 5. 30.
협조자				이문표	
시행	감북동-5104	(2025. 5. 30.)	접수	자치행정과-14257	(2025. 5. 30.)
우	12990	경기도 하남시 감북로 39, (감북동)			/ http://www.hanam.go.kr
전화번호	031-790-5728	팩스번호	031-790-6638	/ applestar@korea.kr	/ 비공개(5)

부패를 지우면 창림이 모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 안	의 견	비 고
별표 중 감북동, 감일동 관할구역란	<p>감북동 3통 7반 - 감일동 180~185, 189, 202, 209~213</p> <p>감일동 1통 2반 - 감일동 205~208, 214~33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일동 180번지는 감북동 행정복지센터 관할로의 변경구역에 해당하지 않음(감일동 행복지센터 관할구역임) - 감일동 202, 209번지는 재검토(농지 및 목장용지) - 감일동 210~222번지는 감북동 행정복지센터 관할로의 변경구역에 해당 -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변경 필요 <p>※ 감북동 3통 7반 -감일동 182~189, 210~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일동 205~208번지는 감북동 행정복지센터 관할로의 변경구역에 해당 - 감일동 214~222번지 까지는 감북동 행정복지센터 관할로의 변경구역에 해당 -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변경 필요 <p>※ 감일동 1통 2반 - 감일동 223~333</p>	

2025년 5월 28일

의 견 제출자	성 명	감북동장	전화번호	031-790-6608
	주 소	경기도 하남시 감북로 39		